
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5038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9.

발 의 자 : 이정문·조정식·이학영  
이인영·김남근·한민수  
문진석·박수현·이연희  
이재관·안태준·전현희  
정태호·한준호·백혜련  
최혁진·조승래 의원  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사업자등이 표시·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.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개 분야 24개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 사항을 고시(「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」)하고 있으며, 최근에는 결혼서비스·요가·필라테스 등의 업종에 대해 상세 가격 및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 적용 업종 및 사업자 범위를 확대해 왔음.

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정된 집행 인력만으로는 피해가 빈발하

는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.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권한의 위임·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).

##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3(권한의 위임과 위탁)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16조의4(보고)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6조의3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&lt;신 설&gt;</u> | <u>제16조의3(권한의 위임과 위탁)</u><br><u>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</u><br><u>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</u><br><u>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</u><br><u>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</u><br><u>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</u><br><u>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</u><br><u>다)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</u><br><u>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u>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<u>제16조의4(보고) 공정거래위원회</u><br><u>는 제16조의3에 따라 위임 또는</u><br><u>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 또</u><br><u>는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</u><br><u>고를 하게 할 수 있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